

#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

( 의안번호 제448호 )

## 심사 보고서

1997. 11.

총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1. 19

고 성 군 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11. 27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11. 27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예매, 임차, 도급,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불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함.

### 3. 주요골자

- 제1조(목적)에 "입찰참가 신청"을 삽입하고, 제5조(징수방법)에 "입찰참가 신청과 각종"을 삽입함.(안 제1조, 안 제5조)
- 제3조(요율) 제1항 요약의 "별표 1"에 "입찰참가 신청 1건당 10,000원"을 신설하여 개정함.(안 별표 1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산청군의원 입법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해 건설협회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근거에 의한 안건으로
-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할 경우 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
- 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입찰에 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므로 과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96년도 입찰건수는
- 답 : 67건으로 6,000만원 정도이다.
- 문 : 1, 2차 입찰 참가자에게도 적용되는지
- 답 : 유찰, 낙찰 관계 없이 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건당 10,000원 징수

#### 6. 토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'97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